##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『낚시관리 및 육성법』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어선의 승객, 낚시 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11. 22.

## 고 성 군 수

### 1. 영업시간의 제한

- 가. 야간 항해장비 및 레이다 설치어선 : 22:00 ~ 익일 03:00
  - ※ 단, 야간항해장비 설치어선 중 3톤 이상의 낚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항해 가능 시간을 적용한다.
- 나. 선외기 설치어선 또는 레이다 미설치 낚시어선의 영업제한 : 일몰 30분 후 ~ 일출 30분 전 (기상청 발표기준)

## 2. 영업구역의 제한

- 가.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
- 나. 고성 삼산 해명·하일 맥전포, 하일 등대·삼산 버드래의 소초 및 레이다 기지 주변 300m이내 해역
- 다. 간출암 영업시는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 낚시어선이 간출암으로부터 200m이내 대기중일때 가능하며, 사유도서는 소유자가 영업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영업을 제한
- 라. 선외기 설치 및 레이다 미설치 낚시어선 중 3톤 미만 낚시어선은 고성군내 소재 선착장으로부터 3마일을 벗어난 해역

# 3. 선외기 설치어선의 낚시어선업 안전운항조치 및 인명안전에 관한 장비착용

가. 기상특보 발효시 및 기상불량 : 출항금지

나. 안전운항 위험시 : 출항제한

다. 승선자(승객, 선원)은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.

#### 4. 승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

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및 면허어장 상에 잡종선 (목재류, 합성수지류 등)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

### 5.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

#### 가. 공통사항

낚시어선에 승선한 승선자 전원(승객, 낚시어선업자, 또는 선원 등)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
#### 나. 승객 준수사항

- 1)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로부터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하며,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어선업자가 대피 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여 한다.
- 2)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수산자원보호·수질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- 3) 낚시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.
- 4)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- ②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운전운항을 위한 주의 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 - ③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 - ④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 - ⑤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양생 동·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
- 5)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즉각 응하여야 한다.
- 6) 낚시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.
- 7)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의 포획·채취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을 준수하고 포획·채취 시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- 8)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.

#### 다. 낚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

- 1) 낚시어선업자는 [별표1]에서 정한 『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』를 갖추어야 하며,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할 경우 승객의 준수사항과 대피 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.
- 2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① 승객과 상호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장비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② 출입항 신고시 낚시지점별 하선인원을 신고하여 승객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.
- 3)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·군의 관할구역에 안내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하여 관할시장, 군수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- 4)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.
- 5)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① 낚시객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야 하며,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내 수거식 간이변기 1식 이상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.

- ※ 단,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분뇨를 저장 또는 위생처리하기 위한 설비 (분뇨오염방지 설비) 설치어선 제외
- 6)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,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7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에게 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8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.
- 9) 『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』을 [별표2] 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.

#### 라. 기타

미FDA에서 시행하는 지정해역 정기점검 기간에는 지정해역 내에서 영업을 제한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사항 고시(고성군 고시 제2010-64호)는 폐지한다.

### [별표1]

##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

(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관련)

구 분	설 비
1. 구명설비	가. 최대승선인원의 12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, 이 중 20%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. 나. 최대승선인원의 3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다. 지름 10mm 이상,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
2. 소화설비	가.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: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. 총 톤수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: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
3. 전기설비	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 설비
4. 그 밖의 설비	가.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.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다. 핸드레일 라.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마.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바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

비고 :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「어선법」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.

#### 【별표 2】

##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(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)

#### 1. 게시판의 제작 기준

가. 재질 :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

나. 색상

1) 글씨 : 검은색

다.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: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아래의 (게시방법의 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
### 2. 게시판의 부착장소

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투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# 승선정원

# 명

# 승객 준수 사항

- 1)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수산자원보호, 수질 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2) 낚시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3)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 가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- 나.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운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 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 - 라.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 - 마, 도서등에서 쓰레기 투기,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- 4)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.
- 5) 낚시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합시다.
- 6)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을 준수하고 포획채취 시는 즉시 방류 하여야 합니다.
- 7)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하여야 합니다.